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
----------	------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발 의 자 : 김동율 의원(1명)

찬 성 자 : 우미경, 송재형, 강성언,  
조규영, 김희걸, 오봉수,  
이현찬, 김생환, 김구현,  
양준욱, 최영수, 문종철  
의원(12명)

## 1. 제안이유

화재경계지구 제도의 정비를 위해 개정된 소방기본법(2016. 1. 27 시행) 규정을 반영하고, 북촌, 서촌, 인사동 일대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 및 경계를 강화하고 소방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는 시장임을 명시함(안 제4조).
- 나.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한옥밀집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를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를 “법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을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를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을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인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5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p> <p>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별첨 2]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김동율